

의안번호	2204991
의 퇴 인	김상훈 의원
회 답 일	2024. 11. 1.
추계번호	24F46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업자(수탁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규정 신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의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78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산업단지 토지의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신탁자)에서 신탁업자(수탁자)로 이전된 경우에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78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현행 사업시행자로 한정되어 있는 산업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에 대해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산업단지 토지의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신탁자)에서 신탁업자(수탁자)로 이전된 경우에도 취득세 등을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세입의 감소가 예상됨
 - 산업단지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35%, 재산세 3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개정안에 대한 세수추계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토지의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신탁자)에서 신탁업자(수탁자)로 이전된 부동산가액 등의

자료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므로 취득세 감면 등에 따른 세입효과를 추정하기 어려움

- 참고로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감면규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실적은 2018년 484억원에서 2020년 363억원으로 감소하다가 2022년 447억원으로 증가

[표 1]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실적

(단위: 억원)

	2018	2019	2020	2021	2022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제78조 제1항)	484	387	363	437	447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산업단지 토지의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신탁자)에서 신탁업자(수탁자)로 이전된 경우에도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안에 대한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장설희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설희	02-6788-4836	shjang@assembly.go.kr